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6075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6.08.03.] www.bsagam.co.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3.07.11.]

배사감김밥

정 보 공 개 서

(주)푸드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푸드존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口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77, 4층, 5층, 6층(화곡동, 존스프라자)]

[대표 전화번호 : 032-710-1082]

[대표 팩스번호 : 02-2607-1085]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관리팀 : 1544-2012]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푸드존	빠사감김밥 외4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77, 4층, 5층, 6층(화곡동, 존스프라자)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7.09.04	2007.09.13	이영준	032-710-1082	02-2607-1085
	법인등록번호	110111-3748724	사업자등록번호	113-86-1632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이영준 (주)푸드존	빠사감김밥 외4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77, 4층, 5층, 6층(화곡동, 존스프라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영준	032-710-1082	02-2607-108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이지훈	빠사감김밥 외4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77, 4층, 5층, 6층(화곡동, 존스프라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영준	032-710-1082	02-2607-108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임복례	빠사감김밥 외4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77, 4층, 5층, 6층(화곡동, 존스프라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영준	032-710-1082	02-2607-108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해당없음				

기업을 인수함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빼사감김밥 앤러브스테 이크(주)	빼사감김밥 빼사감러브 스테이크	2021.02.05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78길 12, 8층 807호(역삼 동,프레스티지빌딩)	강대영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빼사감김밥]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빼사감김밥	
상 호	빼사감김밥 OO점	
상표(서비스표)		상표 등록번호: 41-0321870-0000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1,968,848	2,905,878	9,062,969	9,439,653	913,762	580,714
2022년	13,420,607	2,883,966	10,536,641	9,264,025	1,698,790	1,473,671
2023년	14,743,335	3,000,550	11,742,785	9,868,084	1,678,959	1,506,151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영준	대표이사	2002.07.~2005.06.	(주)코스피 대표이사	물류 및 가맹점관리
			2006.09.~2007.03.	피자마루개봉 대표	매장 관리
			2007.01.~2007.09.	피자마루본부 대표	대표 이사
			2007.09.~현재	(주)푸드존 대표이사	대표 이사
	이지훈	이사	2017.03.~2019.04.	(주)푸드존 실장	신규사업팀
			2019.05.~현재	(주)푸드존 이사	매장 관리
	임복례	감사	2007.11.~2009.11	피자마루동탄 대표	매장 관리
			2007.09.~현재	(주)푸드존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	3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푸드존	가맹사업 경영	2007.01.10. ~ 현재	피자마루(등록번호:20080100739)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주)푸드존	가맹사업 경영	2020.12.23. ~ 현재	모던통닭(등록번호:20160757)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주)푸드존	가맹사업 경영	2021.02.05. ~ 현재	빠사감리브스테이크(등록번호:20170168)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주)푸드존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비맨션커피&토스트(등록번호:20220139)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간판 및 사용매뉴얼,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2014.07.28. 출원 2015.05.13. 등록	출원 제41-2014-0030369 등록 제41-0321870-0000	(주)푸드존	2025.05.13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가맹본부의 빼사감김밥 가맹사업 현황

1. 빼사감김밥을 시작한 날 : 2018년 4월 4일

2. 빼사감김밥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빼사감김밥앤러브스테이크(주)	빼사감김밥	강대영	2018.04.04.~2021.02.0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78길 12, 8층 807호(역삼동,프레스티지빌딩)
(주)푸드존	빼사감김밥	이영준	2021.02.05.~현재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77, 4층, 5층, 6층(화곡동, 존스프라자)

3. 빼사감김밥 업종

영업표지	업종	
빼사감김밥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외식	분식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빼사감김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6	6	-	5	5	-	7	7	-
서울	1	1	-	1	1	-	3	3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1	1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4	4	-	4	4	-	3	3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1	1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뼈사감김밥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7	1	-	2	1	6
2022년	6	-	1	-	2	5
2023년	5	3	-	1	-	7

6. 뼈사감김밥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가맹본부	(주)푸드존	피자마루	20080100739	피자	603/1	571/1	524/1
	(주)푸드존	모던통닭	20160757	치킨	10/0	10/0	12/0
	(주)푸드존	뼈사감 러브스테이크	20170168	스테이크 전문점	1/0	1/0	0/0
	(주)푸드존	비맨션커피& 토스트	20220139	커피	0/1	0/1	0/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7	223,404	15,957	435,000	22,247	91,434	9,143	5곳 산정
서울	3	-	-	-	-	-	-	5곳 미만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3	-	-	-	-	-	-	5곳 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1	-	-	-	-	-	-	5곳 미만
제주	-	-	-	-	-	-	-	-

-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포스테이터에 따른 매출액입니다.
- ▶ 당사는 가맹점이 5곳 미만인 지역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하는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빠사감김밥]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빠사감김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7	55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빠사감김밥 가맹점 관리를 가맹본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빼사감김밥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0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94,555	-	-	
광고		비공개	94,555	-	-	
판촉			-	-	-	

※ 위 금액은 손익계산서 광고비 중 피자마루 광고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당사는 빼사감김밥 외에 다른 가맹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 중 빼사감김밥에 사용한 비용은 적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가입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푸드존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5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빠사감김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입비	7,700	계약체결시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 상표 사용승인 및 사전 조사비용	소멸
교육비	3,300	계약체결시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	소멸

2)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에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계약이행 보증금	1,0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2,000
가입비	7,7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1,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20평기준)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가맹본부	93,500	4,675	시설계약시: 40% 공정(50%): 40% 오픈 3일 전: 20%	66㎡ 기준 (20평형)
인테리어	협력업체	44,000	2,200	상동	66㎡ 기준, (3.3㎡ 증가시 2,200,000원 추가 부담)
의/탁자	협력업체	22,000	1,100	상동	66㎡ 기준, (3.3㎡ 증가 시 110,000원 추가 부담)
간판	협력업체	4,400		상동	외부 메인 간판 1식 및 돌출 간판 1식 별도
장비	협력업체	22,000		상동	장비기종 및 입고수량의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오픈 홍보물	협력업체	1,100		상동	인쇄물, 유니폼, 포장용품 등
기타	협력업체	별도	별도	상동	냉난방기, 급수/배수배관 급기/배기배관, 전기증설, 철 거, 테라스, 갈바, 소방, 천장 2.9m이상 할증, 화장실, 자동 문, 외부공사
	협력업체				어닝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점포개발팀 (1544-2012)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및 추천 → 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가맹희망자 입지선정	희망입지 현장조사 등 시장분석 의뢰 → 본사 승인 여부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일 것 (보건증 소지 가능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빠사감김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천원)		총액의 10%	총액의 50%	총액의 4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10일	계약일+20일
비고			인테리어공사 전	오픈 7일 전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220	다음 월 10일		소멸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진행 시 협의사항			소멸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550 (1인)	교육 실시 10일 이전		소멸	교육필요시 5일 교육비
POS 사용료	협력업체	33 (1개월)	다음 월 10일		소멸	매월사용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4%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준: 2023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당사의 폐사감김밥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대가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

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빠사감김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빠사감김밥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법인의 대표자 명의변경이나 직계존비속간 또는 배우자간의 승계일 경우에는 양수인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관련계약 제28조).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전 서면통보 → 양수인에 대한 당사 면접 → 당사 최종 결정 → 가맹금 납입 및 신규 계약서 작성[교육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함

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 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빠사감김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별첨2와 같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빠사감김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빠사감김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

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가 빼사감러브스테이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스테이크 및 원부자재 일체	1. 당사는 제품 및 상품의 전국적인 동질성과 통일설의 유지, 및 대외적인 신용도의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이 필수적이라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당사가 공급하거나 품질 및 규격을 특정하여 인정한 제품 및 상품만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계약 제25조(상품조달과 관리 및 대금지급)]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3회) 3회 이상 위반: 납품 중지 및 계약 해지	
냉동식품류 및 공산품, 야채류, 김치류, 소스류, 일회용기	2. 당사는 필요할 경우 귀하의 취급상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결과 당사가 공급 또는 인정하지 아니한 제품 및 상품을 귀하가 취급한 경우 당사는 통일적 이미지 확보 대외적 신용도의 확보, 타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및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귀하에 판매중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계약 제25조(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지급)]	[관련계약 제27조(상품공급의 중단), 제29조(계약의 해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12월 기준(단위:원)

빼사감 야채김밥	2,500	김치우동	5,000
빼사감 고기김밥	3,000	잔치국수	5,500
매운고추김밥	3,000	비빔국수	5,500
수제떡갈비김밥	3,500	물냉면	6,500
치킨테리야끼김밥	3,500	비빔냉면	6,500
수제등심돈까스김밥	3,500	매운비빔냉면	6,500
백김치김밥	3,500	냉모밀	6,500
유부김밥	3,500	비빔모밀	6,500
프랑크소세지김밥	3,500	쫄면	5,500
참치마요김밥	3,500	옛날국물떡볶이	4,500
크래미마요김밥	3,500	사골만둣국/사골떡국	5,000
소불고기김밥	4,000	김치순두부	6,000
베이컨김밥	4,000	짬뽕순두부	6,000
왕새우김밥	4,000	짬뽕밥	5,000
김치제육김밥	4,000	왕돈까스	7,000
로즈마리훈제연어 김밥	4,000	고기/김치/갈비만두	4,000
치즈김밥	3,500	소불고기덮밥	6,000
빼사감 라면	3,500	뚝배기불고기	6,000
라면	3,500	매운낙지덮밥	6,000
떡라면	4,000	비빔밥	5,500
짬뽕라면	4,500	육개장	6,000
김치라면	4,500	새우튀김덮밥	6,000
볶음고기라면	5,000	볶음고기덮밥	5,000
새우튀김우동	5,500	치킨마요덮밥	5,000
부산어묵우동	6,000	카레덮밥	5,500

부산어묵	5,500	알밥	6,000
------	-------	----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김밥전문점으로 하는 가맹사업	빠사감김밥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점포 개설 당시의 영업 상황과 주변 상권이 향후 해당 지역의 상권의 변화나 새로운 인구밀집 건축물의 입주 또는 철거 등의 제반 영업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업환경변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당사의 신규 영업점의 개설 허락 등 귀하의 기존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행위가 행해질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는 귀하의 영업개시 후 위와 같은 영업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귀하의 상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추가로 신규점포를 직접 개설하거나 또는 다른 영업점의 개설을 허락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관련계약 제4조제2항)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빼사감김밥]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빼사감김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빠사감김밥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제5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제5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23조제5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23조제5항
○ 가맹본부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23조제5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제5항
○ 기타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3조제5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 또는 귀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에게 관련계약 제27조(상품공급의 중단)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을”에 대한 상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 공급조건을 지체 없이 귀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상품/자재의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2) 2회 이상 용역수수료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용역수수료의 산정을 위한 총 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2회 이상 허위로 지하는 경우 4) 품질관리기준을 2개월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점포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6)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종업원이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8) 회계 및 기록 등을 포함한 재정정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총2회 이상 불이행, 거부 또는 해태 한 경우 9) 통일되고 높은 수준의 품질수준, 서비스, 청결상태의 유지와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 및 대리인이 조사한 결과 매뉴얼 및 기타 규정된 수준에 위배된 결과가 발생한 경우 10)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 또는 대리인이 점포, 원료, 상품 및 근무자에 대한 검사결과 매뉴얼 및 기타 규정된 수준에 위배된 결과가 발생한 경우 11) 가맹본부의 회계장부, 기록, 계산서 등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결과 고의적 매출누락 및 매출에 관련된 규정위반이 발생하거나 또는 누락에 대한 추가 지불(상품대금 및 연체이자, 조사비용 등)이 지연되는 경우 12)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당사가 약정한 상품, 자재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관련계약 제27조
○ 귀하가 관련계약서의 기타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귀하에게 그러한 불이행 사실이 통보된 후 2주일 내에 이것이 개선되지 않거나, 또는 귀하가 본 계약서 이행 12개월(불이행	관련계약 제29조

일로부터 12개월)동안 3회 이상 불이행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불이행이 서면 통지 후 개선되었다라도 불이행 횟수에 포함됩니다.	제3항
○ 합의 해지 등에 의한 보상금 1. 관련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귀하는 문서에 의한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동의가 있을 때까지는 본 계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귀하에게 관련계약 제27조의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사의 통지로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계약이 위 1호에 의거 합의 해지 될 경우 합의 해지를 요청한 당사 또는 귀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액 : 귀하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용역수수료[관련계약 제6조]를 계약기간 중의 잔여 개월 수로 곱한 금액	관련계약 제29조 제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29조 제2항
○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29조 제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9조 제2항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29조 제2항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 제2항
○ “을”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 제2항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29조 제2항
○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29조 제2항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29조 제2항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 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1.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함 2.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3. 동의가 없는 경우 관련법규 및 상관습에 의한 조치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당사는 관련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당사의 승인 없이 관련 계약서상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관련 계약서상의 제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본 계약상의 지위나 자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관련계약 제28조(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본부에 양도인의 미수금 정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 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본부 (1544-2012)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

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 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개발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명의이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협의			
업무위탁	협의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경업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뼈사감김밥 가맹점을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통해 약속한 비밀유지 및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제반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계약 제31조(비밀유지)]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김밥류, 분식류를 제공하면서 분식점이나 음식업 형태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 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1544-2012)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빼사감김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 ~ 22:00	365일 연중 무휴 영업	문의(1544-20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권장)	가맹점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가맹점사업자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푸드존과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빼사감김밥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진행 시 협의	진행 시 협의		
관촉 행사	전체 행사의 경우 (가맹사업자관촉물의 50%부담) 매장 별도 행사의 경우 (가맹사업자관촉물의 100%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익월 10일 입금		관촉물 제작시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관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광고 및 관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촉의 경우에는 찬성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와 관촉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관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계약서 제34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과 “을”의 종업원 등의 귀책사유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조하십시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협의과정에 따라 변경가능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곳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체결일 14일 이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협의과정에 따라 변경가능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협의과정에 따라 변경가능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5	
가맹금 예치	- 서울보증보험(주)에 보증보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가입)	계약체결 후 24시 이내	
점포실측/설계/시안	- 투자비 산출	계약체결 후 10일 소요	
점포 시공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공사개시후 45일간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교육시작(20일간)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규정 및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 개선의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는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오픈지원	가맹점 오픈시 인력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오픈지원기간 협의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팀 (1544-2012)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문의: 운영팀 (1544-2012)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 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 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빠사감김밥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빠사감김밥]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금전지급의무 지체 시 지연이자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그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빠사감김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빠사감김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2주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인 / 5일	550	본사 필요유무 결정
매장 방문 교육	1일	110	본사 필요유무 결정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계약서 15조(교육 및 훈련)에 따라 1주일 전 통보한 교육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포를 개설할 수 없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5조(교육 및 훈련)에 따라 1주일 전 통보한 교육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벌금 부과 내역 : 교육비용 외에 1회 교육마다 200,000원 부과.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2			
3			

※ 당사는 빼사감김밥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1544-201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bsagam.co.kr]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빼사감김밥 원 • 부재료 리스트

(2023년 기준, 변동 시 별도 공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빼사감러브스테인크 가맹점에도 위 품목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별첨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재무현황(2023년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재무현황(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푸드존	영업표지	빼사감김밥
제공확인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주)푸드존 대표이사 이 영 존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푸드존	영업표지	빠사감김밥
제공확인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주)푸드존 대표이사 이 영 존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